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2015년 12월호

월간 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20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금융감독원, 2015.12.23)
-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예고(금융감독원, 2015.12.23)

세무정보

- 2015년 귀속 근로소득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 06179)

QRM 본부
02 - 2009 - 5718

회계소식 등

20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금융감독원, 2015.12.23)

개요

■ 개요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5년 중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감리 지적사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16년 테마감리 대상으로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함.

[2016년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



2016년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

■ 2016년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

1.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미청구공사는 자산으로서 회계상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수익금액에서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수익금액보다 청구·회수한 금액 부분이 큰 경우 그 차액은 초과청구공사의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표시



(선정배경) 최근 건설·조선업종에서 공사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미청구공사금액(또는 초과청구공사금액)과 관련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 미청구공사금액은 공사진행률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또한, 미청구공사금액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문제도 자주 제기됨.

(회계오류 예시) A사는 장기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가 50% 진행되어 발주처에 동 대금만큼 청구했음에도 회계상으로는 진행률을 80%로 과대평가하여 차액인 30%를 미청구공사로 계상

(선정기준) 미청구공사금액 변동성, 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 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대상 선정

2.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선정배경) 유가·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락추세에 있으나,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고평가 유인 상존. 유럽 증권시장감독기구(ESMA)도 비금융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및 공시에 있어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6년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로 '공정가치 평가 및 공시'를 선정·발표('15.10.27)

(언론보도) 원유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되나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원유 뿐만 아니라 철광석, 동, 알루미늄 등 대부분의 원자재 수요가 위축돼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며, 당분간 가격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회계오류 예시) B사는 제품 원재료인 구리, 납, 철강 등이 취득 후 공정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동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로 과대평가

(선정기준) 비금융자산의 변동성, 자산총액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대상 선정

3.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선정배경) 기업평가나 대출심사 시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정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분식위험정보(이익과 영업현금흐름 괴리정도)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은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유인상존

미국 월드컴은 비용을 투자로 바꿔(38억불)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더 많이 벌고 투자를 더 많이 한 것처럼 회계처리('01년 SEC 결정)하였으며, Computer Science Corporation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으로 분류('15년 SEC 결정)

(선정기준) 업종별 영업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감리대상회사 선정

4.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선정배경)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한계기업 등이 단기채무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유동성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유인 존재

(*) 단기채무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회계오류 예시) D사는 유동성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원보증금 및 만기는 3년이나 1년 내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이 있는 전환사채를 청구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비유동부채로 분류

(선정기준) 동종업종 평균대비 유동성 비율, 채무증권발행내역 등을 감안하여 감리대상회사 선정

테마관련 회계기준서 주요 내용

1.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관련기준서: K-IFRS “제1011호(건설계약)”,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등)

K-IFRS(제1011호: 건설계약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미청구공사 금액은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 규정

2.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관련기준서: “제1024호(공정가치 측정)” 등)

K-IFRS(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고 규정

3.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관련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등)

K-IFRS(제1007호: 현금흐름표)에서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고 규정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수익창출활동을 말하여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활동
투자활동: 장기성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4.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관련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K-IFRS(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부채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규정

■ **향후 계획**

향후 계획

- ('16.3월) 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 접수
- ('16.4월) 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 통보
- ('16.5월) 기준서 등을 기초로 4대 회계이슈에 대해 감리시 참고할 점검표 마련
- ('16.6월) '15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 선정
테마감리의 비중을 점차 확대(30%→50%)하여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 단축
- ('16.7월)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한 테마감리 착수

※ (참고) 회계절벽 관련사항

분기 중 전분기 대비 일정금액 이상의 손실을 계상한 기업을 심사감리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 빅배스 관련사항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정과목과 관련된 것으로 테마감리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아 테마감리 이슈로는 미선정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예고(금융감독원, 2015.12.23)
개요
■ 개요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회사에 대해 동일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는 경우 공정한 감사를 했어도 회계불신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통해 회계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회계분식 의혹이 제기된 경우 회사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먼저 조사한 후 추후에 감독당국이 감리

대상
■ 대상

테마감리 이슈에 한정하지 않으며, 회사가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목적인 경우 자율지정신청 가능. 언론 등에서 회계의혹을 제기한 경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횡령·배임사실 공시, 증권신고서 잦은 정정 등으로 심사감리 우선선정대상인 경우 등 포함

인센티브
■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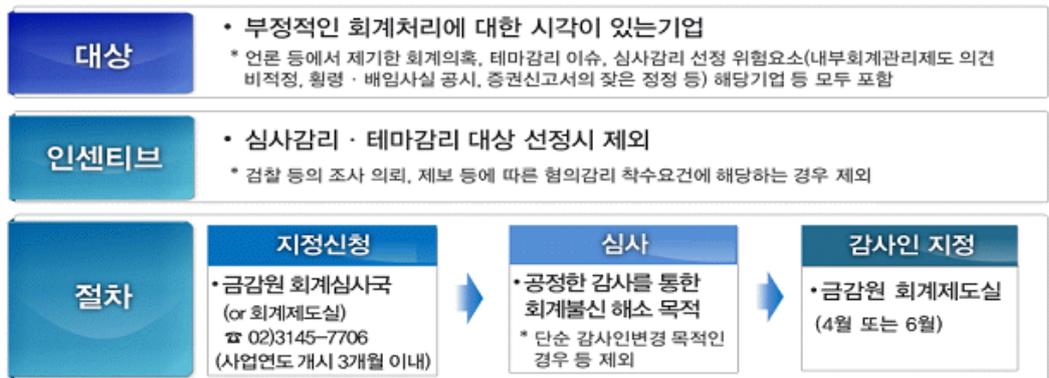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중도에 감사인 변경을 허용(*1) 및 **당해 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2)할 예정**

(*1) 상장법인은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도에 감사인 변경할 수 없음

(*2) 단, 검찰 등의 조사 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예외

신청시기
■ 신청시기

사업연도 개시 후 3월 이내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또는 회계제도실)에 신청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주요내용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이며,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하여야 함.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적용 사례》

납입액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0 원	900 만 원	700 만 원	700 만 원×15%또는 12%
200 만 원	500 만 원	700 만 원	700 만 원×15%또는 12%
500 만 원	200 만 원	600 만 원	600 만 원×15%또는 12%
900 만 원	0 원	400 만 원	400 만 원×15%또는 12%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주요내용

○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함.(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소득공제율》

구 분		소득공제율	
		현행	개 정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5천만 원 이하분	50%	15백만 원 이하분 100% 15백만 원 초과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좌 동)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 투자		10%	(좌 동)

○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함.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금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 월분부터 4 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도입) 국세청에서는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하여 제공함.
-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 11 월에 개통함.
(3 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 및 그래프 제공)
- 내년 1 월 중순부터 나머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